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64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허 영·한병도·임호선

박지원 · 홍기원 · 서영교

박 정 • 주철현 • 박상혁

민형배 · 전재수 · 소병훈

박정현 • 이연희 • 이기헌

조계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 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음.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일반등급(99%)만을 취득함.

이에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물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안전"을 "내구성·안전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한 자(제106조제1항 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시공을 한 자(제106조제1항 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생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u>그 밖의 관계 법령</u> 에 맞고 <u>안</u>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u>전</u>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 령</u>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	
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	제24조(건축시공) ①
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	
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u>그 밖의 관계</u>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 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 다.

② ~ ⑦ (생 략)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2. ~ 5. (생략)

② ~ ④ (생 략)

	'건설기술 진
	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그
	<u>밖의 관계 법령</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	113조(과태료)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한 자(제106
	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시공을 한 자(제106

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